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(승차용 안전모) 개정 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6. 2. 11.)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(승차용 안전모)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하였다.

1. 개정 취지

- 現유통 중인 승차용 안전모 제품에 맞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, 사이즈, 시험방법 등 안전기준 정비

2. 주요 내용

- 국제적으로 사용중인 안전모의 형식, 시험방법 등 용어를 정비하고, 現유통제품에 맞춰 안전모 종류(1종, 2종) 현행화
-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모에 맞춰 시험용 머리모형을 확대(3종→6종)하고, 사용자를 위한 ‘규격표시’ 방법 개선
- 시험용 머리모형 개선에 따른 충격 흡수성, 턱끈 강도 등 관련 시험방법 정비 및 턱끈 없는 안전모에 대한 요구사항 마련

3. 고시일

- 2026년 2월 11일

4. 시행일

- 2026년 10월 11일

▪ 세부 내용

-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ats.go.kr/ → 소식 → 고시·공고)에서 확인